|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4년 04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05월 1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자산운용

# 목 차

CONTENTS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 | | | | 작성기준일: 2024.04.22. |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펀드코드 : 31435] | | | | | | |
|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 | | | | |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br>집합투자기구의 핵심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정보는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단 국공채에 50%이상 투자)에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br><br>• 투자전략_기본운용방안<br>-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br>-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창출<br>-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br><br>* 비교지수(Benchmark) :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 100%<br>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br><br>**[위험관리]**<br>•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br>-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br>-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잦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br>• 신용위험 관리방안<br>-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br>-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하나자산운용

| | |
|---|---|
| |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br>-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br><br>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추가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전환형 |

**투자비용**

(2024년 02월 02일 기준)

| 하나 인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 (제1호)[국공채]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 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없음 | 0.855 | 0.650 | - | 0.863 | 88 | 181 | 279 | 489 | 1,112 |

* 구체적인 투자비용 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피투자기구의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연환산)**

(2024년 02월 02일 기준)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2023/02/02 ~ 2024/02/01 | 2022/02/02 ~ 2024/02/01 | 2021/02/02 ~ 2024/02/01 | 2019/02/02 ~ 2024/02/01 | (%)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2001-02-02 | 3.22 | 0.82 | -0.75 | -0.05 | 2.68 |
| 비교지수 | 2001-02-02 | 4.13 | 1.44 | 0.16 | 1.02 | 1.65 |
| 수익률 변동성(%) | 2001-02-02 | 3.93 | 4.75 | 4.13 | 3.45 | 2.12 |

* 비교지수 =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 100%
*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4년 04월 22일 기준)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형_국내,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집합투자 기구수(개) | 운용 규모(억원)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책임 | 정재민 | 1975 | 이사 | 75 | 155,872 | 3.39 | - | 4.10 | 3.71 | 22.5년 |
| 부책임 | 고영철 | 1979 | 부장 | - | - | - | - | 4.10 | 3.71 | 8.7년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하나자산운용

<table>
<tr><td>유의사항</td><td>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주요투자 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
<tr><td>투자원본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
<tr><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신용위험 및 부도위험</td><td>취득시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이자율 변동위험</td><td>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유동성 위험</td><td>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매입 방법</td><td>· 17시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매입<br>· 17시 경과 후 :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td><td rowspan="2">환매 방법</td><td rowspan="2">·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3영업일 지급<br>· 17시 경과 후 : 제4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td></tr>
<tr><td>과세</td><td colspan="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td></tr>
</table>

| | |
|---|---|
| |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환절차 및 방법 | ·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 9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 유형 |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구 |
|---|---|
| **채권형**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 **채권형** | 하나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
| **혼합형** | 하나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 **주식형**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
| **주식형** | 하나인Best연금저축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주식형** | 하나인Best연금China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재간접형** | 하나인Best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 **재간접형** | 하나인Best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재간접형** | 하나인Best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하나자산운용<br>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 | | |
|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1좌단위 모집) |
| 효력발생(예정)일 | 2024년 05월 17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펀드코드 |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31435 |

**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바.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사.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 가능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hanaam.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펀드코드 |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31435 |

##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 변경사항 |
|---|---|
| 2001년 02월 02일 | - 최초설정일 |
| 2004년 10월 26일 | - 보수 이원화 |
| 2006년 07월 01일 | - 보수 배분율 변경 |
| 2007년 08월 01일 | - 회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
| 2007년 11월 05일 | - 운용역 변경 (김세윤 → 김창섭) |
| 2009년 02월 03일 | - 법적용 변경(증권투자신탁업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 2009년 04월 29일 |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br>하나 UBS 인 Best 연금국공채투자신탁(제 1 호)<br>=>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
| 2009년 12월 01일 | - 운용역 변경 (김창섭 → 손수빈) |
| 2010년 11월 15일 | - 운용역 변경 (손수빈 → 공경일) |
| 2011년 01월 07일 | - 연금기간 문구 변경<br>- 연금의 지급방법 기술내용 변경<br>-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 반영(2011.1.1)<br>- 이익분배조항, 운용보고서 교부방법 및 해지사유 변경<br>- BM 변경 |
| 2011년 02월 21일 | - 전환회수 및 연금지급 변경신청일의 변경 |
| 2011년 04월 11일 | - 운용역 변경 (공경일 → 나권진) |
| 2011년 08월 10일 | - 연금 자투자신탁 추가로 인한 전환 등 내용 변경 |
| 2012년 09월 17일 | - 설명서 정기 갱신 |
| 2012년 12월 24일 | - 전환가능 펀드명 변경 |
| 2013년 02월 04일 |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HSBC 펀드서비스 → 외환펀드서비스) |
| 2013년 02월 25일 | - 운용역 변경 (나권진 → 조익환) |
| 2013년 04월 01일 | - 연금저축계좌 도입관련 변경 |
| 2013년 05월 31일 | - 전환 가능 펀드 추가<br>- 보수 인하<br>- 자통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반영<br>-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

| | |
|---|---|
| 2013년 11월 28일 | - 전환 가능 펀드 추가<br>-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2014년 01월 09일 | - 전환 가능 펀드 추가 |
| 2014년 05월 19일 | -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조항 신설 |
| 2014년 11월 17일 |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설명서 업데이트 |
| 2015년 04월 20일 | - 비교지수 변경 및 투자설명서 업데이트 |
| 2016년 01월 12일 | - 투자대상 신용등급 하락시 처리방안 추가 |
| 2016년 07월 02일 |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
| 2017년 02월 17일 | 1) 해지된 전환 대상 투자신탁 삭제<br>2) 전환 대상 투자신탁명 변경<br>3)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br>4)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br>5)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업데이트 |
| 2017년 03월 24일 | -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전환 기준시간 변경<br>-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 2017년 05월 12일 | - 주식 취득 예외조항 추가 |
| 2017년 05월 31일 | -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인하 |
| 2018년 02월 26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br>-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2019년 02월 19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 2019년 05월 13일 | - 책임운용인력 변경(조익환 → 전나영)<br>- 부책임운용인력 등록(구경서) |
| 2019년 09월 25일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br>-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
| 2020년 02월 14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
| 2021년 05월 21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br>-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 |
| 2021년 07월 08일 | -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구경서 → 신정섭) |
| 2022년 04월 01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2022년 06월 16일 | -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신정섭 → 구경서) |
| 2022년 07월 29일 | - 부책임운용인력 변경 (구경서 → 정재민)<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

| | |
|---|---|
| 2023년 04월 18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br>-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
| 2023년 07월 05일 | - 집합투자증권등 투자한도 변경 및 투자제한 추가 |
| 2023년 10월 20일 | - 신탁업자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주주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와 기존 신탁업자가 계열회사가 됨에 따라 기존 신탁업자를 새로운 신탁업자로 변경) |
| 2023년 11월 16일 | - 주주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 및 펀드명칭 변경 |
| 2024년 04월 09일 |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 2024년 05월 17일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전나영→ 정재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정재민→ 고영철) |

**3.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하나자산운용㈜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br>(대표전화: 02-3771-7800) |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4 년 04 월 22 일 기준)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경력 | 주요운용 이력 |
|---|---|---|---|---|---|
| 책임 | 정재민 | 1975 | 이사 | 22.5년 | - SK 증권 프랍운용팀(2016.08.23~2020.05.18)<br>- 코리아에셋증권 FI Sales(2020.05.19~2022.05.31)<br>- 하나자산운용 채권운용 1 팀(2022.06.17~현재) |
| 부책임 | 고영철 | 1979 | 부장 | 8.7년 | - IBK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2015.08.17~2019.01.28)<br>- 다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2019.01.19~2024.04.16)<br>- 하나자산운용 채권운용 1 팀(2024.04.17~현재) |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형_국내, %) | |
|---|---|---|---|---|---|---|---|
| | | | | 집합투자 | 운용규모 | 운용역 | 운용사 |

| | | | | 기구수(개) | (억원)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책임 | 정재민 | 1975 | 이사 | 75 | 155,872 | 3.39 | - | 4.10 | 3.71 |
| 부책임 | 고영철 | 1979 | 부장 | - | - | - | - | 4.10 | 3.71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 기준일 현재 동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 나권진 | 2011 년 04 월 11 일 ~ 2013 년 02 월 24 일 |
| 조익환 | 2013 년 02 월 25 일 ~ 2019 년 05 월 12 일 |
| 전나영 | 2019 년 05 월 13 일 ~ 2024 년 05 월 16 일 |
| 정재민 | 2024 년 05 월 17 일 ~ 현재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기간** |
| 구경서 | 2019 년 05 월 13 일 ~ 2021 년 07 월 07 일 |
| 신정섭 | 2021 년 07 월 08 일 ~ 2022 년 06 월 15 일 |
| 구경서 | 2022 년 06 월 16 일 ~ 2022 년 07 월 28 일 |
| 정재민 | 2022 년 07 월 29 일 ~ 2024 년 05 월 16 일 |
| 고영철 | 2024 년 05 월 17 일 ~ 현재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전환형

나. 전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232 조에 의거한 전환형 투자신탁으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음의 투자신탁 중 하나의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 년 2 월 28 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 환매 및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펀드 | 내용 |
|---|---|

| | |
|---|---|
| 인 Best 연금[주식] |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
| 인 Best 연금저축 밸류코리아자[주식] |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
| 인 Best 연금자[주식혼합] |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 어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
| 인 Best 연금자[채권] |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
| 인 Best 연금 [국공채] | 채권(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 |
| 인 Best 연금 China 자[주식] |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주식시장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
| 인 Best 연금 글로벌이머징 국공채 자[채권-재간접형] | 이머징마켓 국가 및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이머징 채권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 인 Best 연금 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 인 Best 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 |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당 투자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추구 |

※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 | |
|---|---|---|
| **1.채권** | **60%이상**<br>다만, 주식관련사채는 40% 이하, 사모사채권에의 투자 3%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
| **2.국공채** | **50%이상**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 **3.자산유동화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4.어음** |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
| 5.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
| 6.금리스왑거래 |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
| 7.집합투자증권등 | 30% 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 8.환매조건부 매매 |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
| 9.증권의 대여 1) | 증권총액의 50%이하 | |
| 10.증권의 차입 2) | 증권의 차입은 20%이하 | |
| 11.기타 |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유동성자산 |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가. 단기대출<br>(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br>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

주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 의 경우)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 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본 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예외 |
|---|---|---|
|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 부매수 |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
|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
|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
| **파생상품 투자**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br>-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br>-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 |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 | |

| | | |
|---|---|---|
| | 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
| 집합투자증권 투자 |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 |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br>-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투자증권의 대여,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파생상품 투자한도,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 개월을 말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 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 개월)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안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

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2) 세부운용

| 운용전략 | 세 부 내 용 |
|---|---|
| Duration 전략 | ▪요인분석을 통한 방향성 탐색과 Duration전략 시행<br>▪시장 Overshooting 발생에 따른 투자기회 발생시 탄력적인 시장대응 |
| Sector Allocation | ▪펀더멘탈, 채권수급, 산업분석을 통해 최적의 Sector Allocation 실행 |
| Relative Value Investment (Yield Enhancement) | ▪ 현물채권간 상대가치<br>▪ Yield Curve Trading<br>* Slope Analysis, Shoulder & Rolling Effect, YC Riding |
| Security Selection | ▪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발굴<br>▪ 동일 만기/등급 대비 저 평가 종목 위주 편입 |

3) 비교지수 : **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매경BP종합채권지수(A-이상)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잦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국공채에 5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 우량 CP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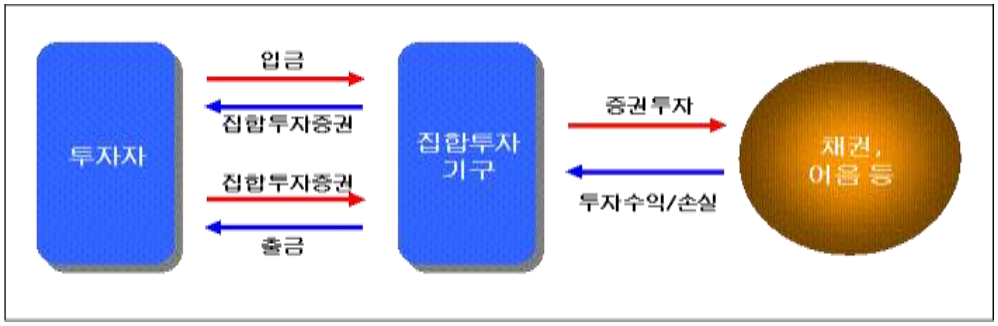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투자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 취득시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위험** |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 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환매에 따른 위험** |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 **기타위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 위**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

| 험 |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13%**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위험이 적은 대신 기대수익도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장기 투자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 위험등급 | 1등급 | 2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급 | 6 등급 |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표준편차 | 25% 초과 | 25%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0.5% 이하 |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 이전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T일 | T+1일 |
|---|---|
| 자금납입일 |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
| (매입청구일) | (기준가적용일) |

(2)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T일 | T+1일 | T+2일 |
|---|---|---|
| 자금납입일 | |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
| | (매입청구일) | (기준가적용일)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T일 | T+2일 |
|---|---|
| 환매청구일 | 기준가적용일<br>환매대금지급일 |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T일 | T+3일 |
|---|---|

| 환매청구일 | 기준가적용일<br>환매대금지급일 |
|---|---|

※ 이 투자신탁이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구 분 | 부담비율 | 비고(부담시기) |
|---|---|---|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판매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일부 환매 및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2) 하나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

(3) 하나인Best연금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4)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 하나인Best연금저축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6) 하나인Best연금China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하나인Best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8) 하나인Best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 하나인Best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위에서 열거한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연금증권[국공채] 또는 연금증권자[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수익자가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5) 수익자가 연금China증권자[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6) 수익자가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7) 수익자가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 10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8)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자[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2)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 연금China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9) 연금증권[국공채], 연금증권자[채권], 연금 China 증권자[주식],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주식-재간접형] 및 연금글로벌롱숏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자[주식혼합], 연금증권[주식], 연금저축밸류코리아자[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30 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 전환전 투자신탁 | 전환후 투자신탁 |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 |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 | 영업일 |
|---|---|---|---|---|---|---|
| | | 17시 이전 | 17시 경과후 | 17시 이전 | 17시 경과후 | |
| 연금증권 [국공채] | 타투자신탁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판매회사 영업일 |
| 연금증권자[채권] | 타투자신탁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
| 연금China증권자[주식] | 타투자신탁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제8영업일 | 제9영업일 | 한국거래소 개장일 |
| 연금글로벌이머징국공채증권자[채권-재간접형] | 타투자신탁 | 제5영업일 | 제6영업일 | 제9영업일 | 제10영업일 | |
| 연금유럽포커스증권자 [주식-재간접형] | 타투자신탁 | 제5영업일 | 제6영업일 | 제9영업일 | 제10영업일 | |
| 연금글로벌롱숏 증권자 [주식혼합-재간접형] | 타투자신탁 | 제5영업일 | 제6영업일 | 제9영업일 | 제10영업일 | |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전환전 투자신탁 | 전환후 투자신탁 |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 |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 | 영업일 |
|---|---|---|---|---|---|---|
| | | 15시30분 이전 | 15시30분 경과후 | 15시30분 이전 | 15시30분 경과후 | |
| 연금증권자 [주식혼합] | 타투자신탁 | 제2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제4영업일 | 한국거래소 개장일 |
| 연금증권[주식] | 타투자신탁 | 제2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제4영업일 | |
| 연금저축밸류 코리아자[주식] | 타투자신탁 | 제2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제4영업일 | |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30분 경과 후 청구한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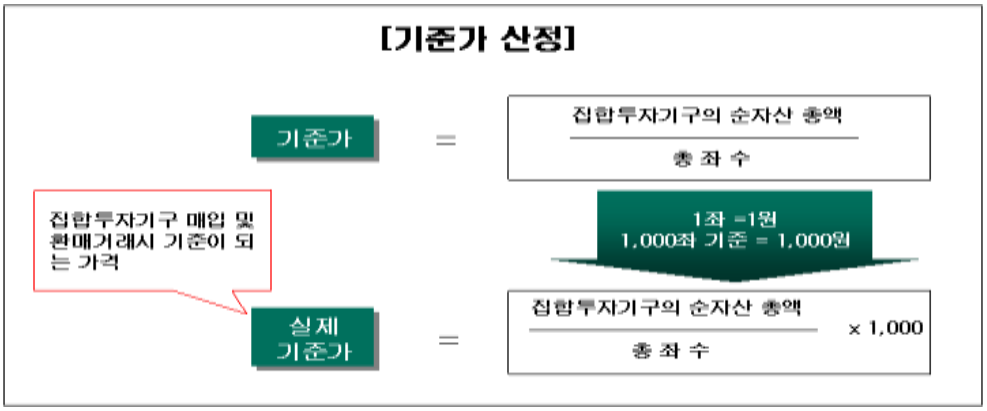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구 분 | 내 용 |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br>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권 |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 |
|---|---|
| 발행 채무증서 | |
| 장내파생상품 |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
| 장외파생상품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중 낮은 가격 |
| 비상장<br>외화표시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집합투자기구 명칭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상기의 수수료율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4 년 02 월 01 일 기준)

| 집합투자기구 명칭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판매회사보수 | 수탁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총 보수 | 기타비용 주1) | 총보수·비용 주2) |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 증권거래비용 주4)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0.160 | 0.650 | 0.040 | 0.005 | **0.855** | 0.008 | **0.863** | - | 0.00 |
| 지급시기 | 3 개월 후급,<br>신탁의 일부해지 및 전부해지 시 | | | | | 사유 발생시 | - | -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23.02.02~2024.02.01)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금액<br>(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원) | 포함되는 항목 |
|---|---|---|
| 증권거래비용 | - |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거래수수료, 대차/대주 또는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금융비용 | -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2024 년 02 월 01 일 기준)

| 집합투자기구 명칭 | 1 년 | 2 년 | 3 년 | 5 년 | 10 년 |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88 | 181 | 279 | 489 | 1,112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 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30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 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br>※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 |

<table>
<tr><td></td><td>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외로 추가 포함</td></tr>
<tr><td>수령요건</td><td>만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br>(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tr>
<tr><td>세액공제</td><td><table>
<tr><th>종합소득<br>과세표준</th><th>총 급여액<br>(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th><th>세액공제 한도</th><th>세액공제율<br>(지방소득세 포함)</th></tr>
<tr><td>45백만원 이하</td><td>55백만원 이하</td><td rowspan="2">6백만원</td><td>16.5%</td></tr>
<tr><td>45백만원 초과</td><td>55백만원 초과</td><td>13.2%</td></tr>
</table></td></tr>
<tr><td>연금수령시 과세</td><td>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td></tr>
<tr><td>분리과세한도</td><td>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td></tr>
<tr><td>해지(중도인출)시 과세</td><td><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연금개시전</th><th colspan="2">연금개시후</th></tr>
<tr><th>연금수령<br>한도내 금액</th><th>연금수령<br>한도초과액</th></tr>
<tr><td>부득이한 사유*</td><td>연금소득세율<br>(5.5~3.3%)</td><td>연금소득세율<br>(5.5~3.3%)</td><td>연금소득세율<br>(5.5~3.3%)</td></tr>
<tr><td>그 외 사유</td><td>기타소득세율<br>(16.5%)</td><td>연금소득세율<br>(5.5~3.3%)</td><td>기타소득세율<br>(16.5%)</td></tr>
</table>
*부득이한 사유<br>- 천재지변<br>-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br>-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의 3개월 이상 요양<br>-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br>-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br>- 회사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td></tr>
<tr><td>연금계좌 승계</td><td>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td></tr>
</table>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21기(2021.02.02 ~ 2022.02.01)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제22기(2022.02.02 ~ 2023.02.0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23기(2023.02.02 ~ 2024.02.01)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1)법시행령 제 264 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 240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요약재무정보 | | | |
|---|---|---|---|
| 항 목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2024.02.01 | 2023.02.01 | 2022.02.01 |
| 운용자산 | 21,647,260,126 | 22,282,125,992 | 25,652,012,087 |
| 유가증권 | 19,581,693,873 | 19,522,207,981 | 21,361,152,114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2,065,566,253 | 2,755,859,305 | 3,291,073,082 |
| 기타 운용자산 | 0 | 4,058,706 | 999,786,891 |
| 기타자산 | 260,165,265 | 223,868,121 | 938,326,037 |
| 자산총계 | 21,907,425,391 | 22,505,994,113 | 26,590,338,124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45,735,938 | 48,363,811 | 60,157,826 |
| 부채총계 | 45,735,938 | 48,363,811 | 60,157,826 |
| 원본 | 22,275,970,482 | 23,618,858,786 | 27,478,449,885 |
| 수익조정금 | 0 | 0 | 0 |
| 이익조정금 | -414,281,029 | -1,161,228,484 | -948,269,587 |
| 자본총계 | 21,861,689,453 | 22,457,630,302 | 26,530,180,298 |

| | | | |
|---|---|---|---|
| 운용수익 | 863,155,822 | -250,032,056 | -884,236,430 |
| 이자수익 | 707,090,516 | 550,449,521 | 509,192,213 |
| 배당수익 | 0 | 0 | 0 |
| 매매평가차손익 | 156,065,306 | -901,345,438 | -1,393,428,643 |
| 기타수익 | 0 | 100,863,861 | 0 |
| 운용비용 | 189,567,979 | 210,794,188 | 258,588,309 |
| 관련회사보수 | 187,812,909 | 202,033,875 | 256,180,742 |
| 매매수수료 | 0 | 0 | 25,457 |
| 기타비용 | 1,755,070 | 8,760,313 | 2,382,110 |
| 당기순이익 | 673,587,843 | -460,826,244 | -1,142,824,739 |
| 매매회전율 | 0 | 0 | 0 |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3 기 0 원, 22 기 0 원, 21 기 0 원 발생)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23 기 0 원, 22 기 0 원, 21 기 0 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 | | | | | |
|---|---|---|---|---|---|---|
| 구분 | 당해 연도 | | | 전년도 | | |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주식 이외의 증권 | 86,778,790,120 | - | - | 103,089,233,800 | - | - |
| 합 계 | 86,778,790,120 | - | - | 103,089,233,800 | - | -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주,원,%)

| 매매회전율 | | | | | | |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 매매회전율 (A/B) |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 | – | – | – | – | – | – |

나.재무상태표



하나자산운용

(단위: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2024.02.01 | 2023.02.01 | 2022.02.01 |
| 운용자산 | 21,647,260,126 | 22,282,125,992 | 25,652,012,087 |
| 현금및예치금 | 2,065,566,253 | 2,755,859,305 | 3,291,073,08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65,566,253 | 2,755,859,305 | 3,291,073,082 |
| 대출채권 | 0 | 4,058,706 | 999,786,891 |
| 매입어음 | 0 | 4,058,706 | 999,786,891 |
| 유가증권 | 19,581,693,873 | 19,522,207,981 | 21,361,152,114 |
| 채무증권 | 19,066,768,873 | 19,522,207,981 | 21,361,152,114 |
| 수익증권 | 514,925,000 | 0 | 0 |
| 기타자산 | 260,165,265 | 223,868,121 | 938,326,037 |
| 미수이자 | 94,541,621 | 101,390,221 | 245,679,932 |
| 선급비용 | 64,760,412 | 21,614,668 | 692,646,105 |
| 기타미수입금 | 100,863,232 | 100,863,232 | 0 |
| 자 산 총 계 | 21,907,425,391 | 22,505,994,113 | 26,590,338,124 |
| 기타부채 | 45,735,938 | 48,363,811 | 60,157,826 |
| 미지급운용수수료 | 8,530,541 | 9,020,538 | 11,221,253 |
| 미지급판매수수료 | 34,655,148 | 36,646,089 | 45,586,482 |
| 미지급수탁수수료 | 2,132,673 | 2,255,100 | 2,805,279 |
|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 266,636 | 281,844 | 350,622 |
| 수수료미지급금 | 150,940 | 160,240 | 194,190 |
| 부 채 총 계 | 45,735,938 | 48,363,811 | 60,157,826 |
| 원 본 | 22,275,970,482 | 23,618,858,786 | 27,478,449,885 |
| 이익잉여금 | -414,281,029 | -1,161,228,484 | -948,269,587 |
| 자 본 총 계 | 21,861,689,453 | 22,457,630,302 | 26,530,180,298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1,907,425,391 | 22,505,994,113 | 26,590,338,124 |
| 총좌수 | 22,275,970,482 | 23,618,858,786 | 27,478,449,885 |
| 기준가격 | 981.40 | 950.83 | 965.49 |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 손익계산서 |
|---|

| 항 목 | 제 23 기 | 제 22 기 | 제 21 기 |
|---|---|---|---|
| | 2023.02.02 ~ 2024.02.01 | 2022.02.02 ~ 2023.02.01 | 2021.02.02 ~ 2022.02.01 |
| 운용수익(운용손실) | 863,155,822 | -250,032,056 | -884,236,430 |
| 투자수익 | 707,090,516 | 550,449,521 | 509,192,213 |
| 이자수익 | 707,090,516 | 550,449,521 | 509,192,213 |
|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609,361,571 | 733,133,580 | 74,244,168 |
| 채무증권매매차익 | 364,541,286 | 259,160,811 | 74,244,168 |
| 지분증권평가차익 | 2,200,480 | 0 | 0 |
| 채무증권평가차익 | 242,619,805 | 473,972,769 | 0 |
|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453,296,265 | 1,634,479,018 | 1,467,672,811 |
| 채무증권매매차손 | 447,332,810 | 1,374,670,446 | 680,610,076 |
| 채무증권평가차손 | 5,963,455 | 259,808,572 | 787,062,735 |
| 기타운용수익 | 0 | 100,863,861 | 0 |
| 운용비용 | 189,567,979 | 210,794,188 | 258,588,309 |
| 운용수수료 | 35,146,236 | 37,807,462 | 47,940,209 |
| 판매수수료 | 142,782,115 | 153,593,378 | 194,757,652 |
| 수탁수수료 | 8,786,413 | 9,451,724 | 11,984,920 |
| 사무수탁수수료 | 1,098,145 | 1,181,311 | 1,497,961 |
| 매매수수료 | 0 | 0 | 25,457 |
| 기타운용비용 | 1,755,070 | 8,760,313 | 2,382,110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673,587,843 | -460,826,244 | -1,142,824,739 |
|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 29.27 | -18.20 | -37.69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1/02/02~2022/02/01 | 31,846 | 31,970 | 3,930 | 3,903 | 8,504 | 8,408 | 27,478 | 26,530 |
| 2022/02/02~2023/02/01 | 27,478 | 26,530 | 1,923 | 1,796 | 5,783 | 5,408 | 23,619 | 22,458 |
| 2023/02/02~2024/02/01 | 23,619 | 22,458 | 3,102 | 2,974 | 4,445 | 4,243 | 22,276 | 21,862 |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별도로 표시한 기준일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1) 비교지수 : 매경 BP 종합채권지수(A-이상)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2024년 02월 01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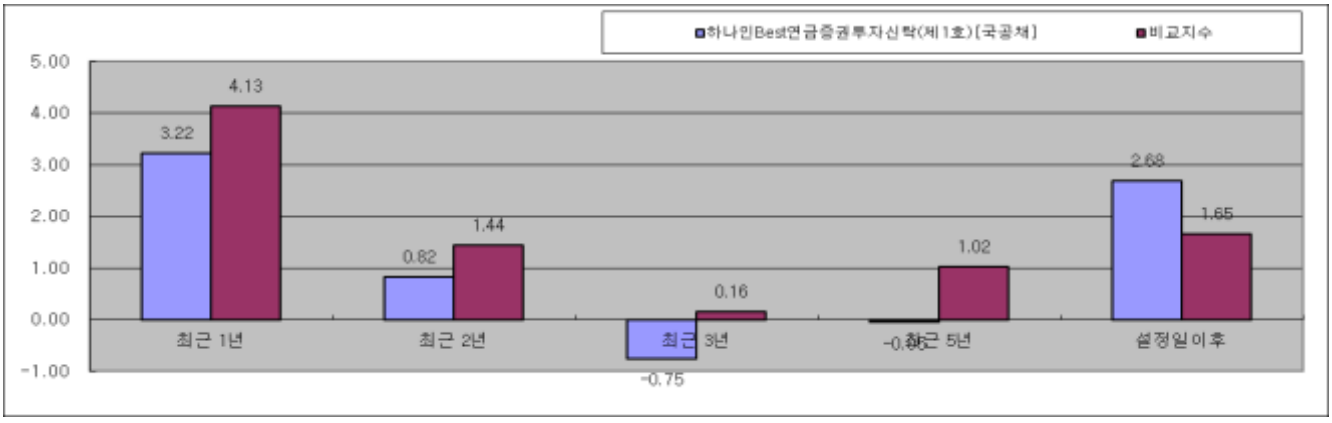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2023/02/02 ~ 2024/02/01 | 2022/02/02 ~ 2024/02/01 | 2021/02/02 ~ 2024/02/01 | 2019/02/02 ~ 2024/02/01 | (%)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2001-02-02 | 3.22 | 0.82 | -0.75 | -0.05 | 2.68 |
| 비교지수 | 2001-02-02 | 4.13 | 1.44 | 0.16 | 1.02 | 1.65 |
| 수익률 변동성(%) | 2001-02-02 | 3.93 | 4.75 | 4.13 | 3.45 | 2.12 |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기준일 : 2024년 02월 01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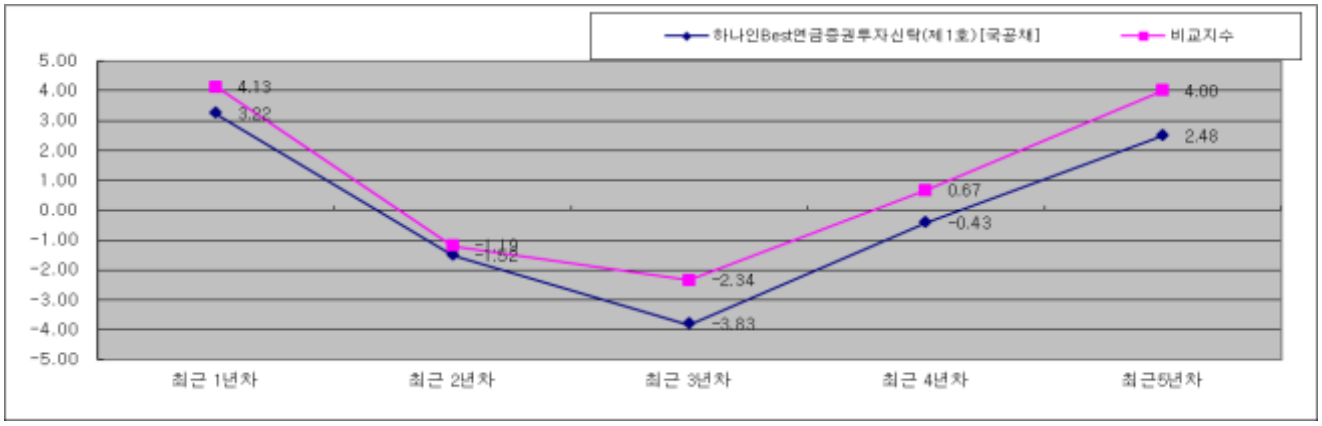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5년차 |
|---|---|---|---|---|---|---|
| | | 2023/02/02 ~ 2024/02/01 | 2022/02/02 ~ 2023/02/01 | 2021/02/02 ~ 2022/02/01 | 2020/02/02 ~ 2021/02/01 | 2019/02/02 ~ 2020/02/01 |
| 하나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2001-02-02 | 3.22 | -1.52 | -3.83 | -0.43 | 2.48 |
| 비교지수 | 2001-02-02 | 4.13 | -1.19 | -2.34 | 0.67 | 4.00 |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4 년 02 월 01 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대한민국 | 0 | 19,226 | 0 | 515 | 0 | 0 | 0 | 0 | 0 | 2,066 | 101 | 21,907 |
| | (0.00) | (87.76) | (0.00) | (2.35) | (0.00) | (0.00) | (0.00) | (0.00) | (0.00) | (9.43) | (0.46) | (100.00) |
| 자산합계 | 0 | 19,226 | 0 | 515 | 0 | 0 | 0 | 0 | 0 | 2,066 | 101 | 21,907 |
| | (0.00) | (87.76) | (0.00) | (2.35) | (0.00) | (0.00) | (0.00) | (0.00) | (0.00) | (9.43) | (0.46) | (100.00) |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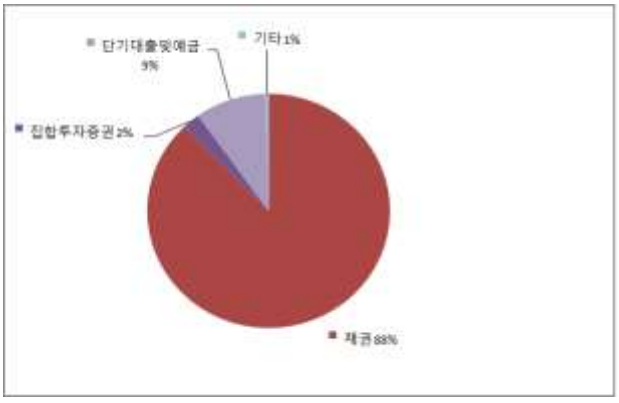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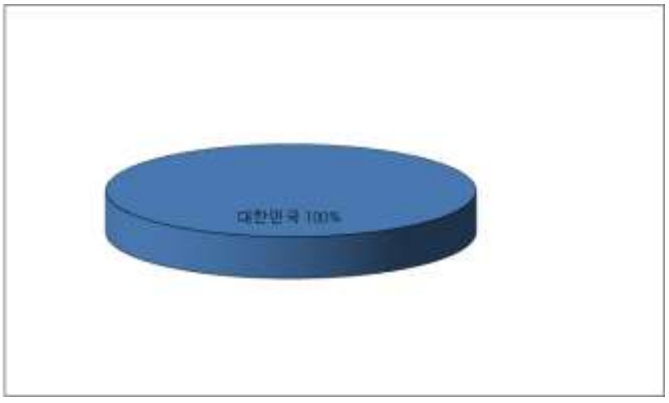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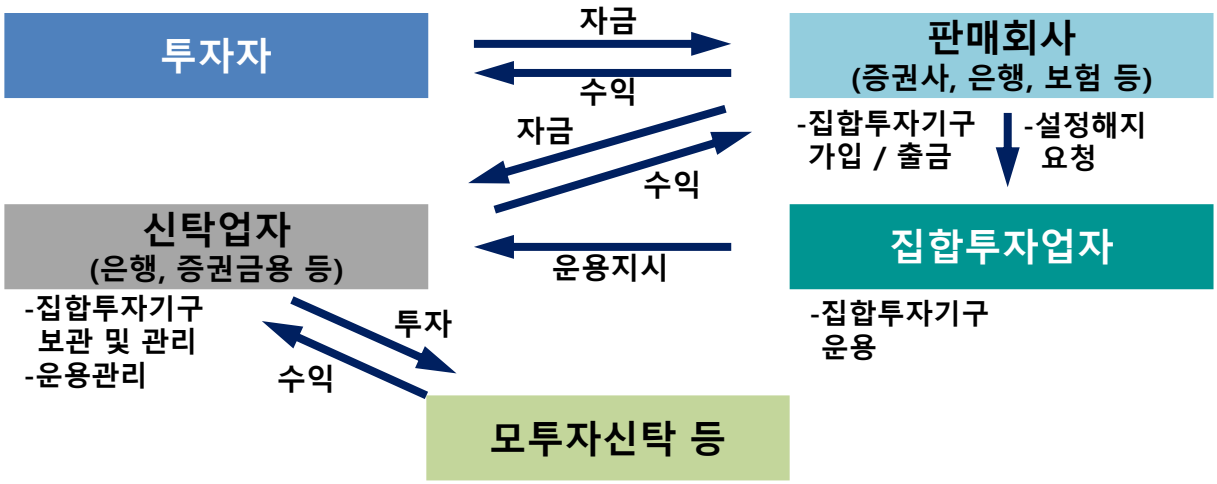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하나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br>(02-3771-7800, www.hanaam.com) |
| 회사연혁 |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br>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br>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br>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로 사명 변경<br>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 설립(대한투자증권㈜ 전액출자<br>2000. 7. 1 영업개시<br>2007.7.2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br>2023.10.27 하나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
| 자본금 | 450억 |
| 주요주주현황 | 하나증권㈜ |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23.12.31 | 22.12.31 | 항 목 | 23.12.31 | 22.12.31 |
| 현금및예치금 | 72,195 | 117,759 | 영업수익 | 29,832 | 28,323 |
| 유가증권및대출채권 | 1,441 | 1,467 | 영업비용 | 23,166 | 18,148 |
| 유형자산및기타자산 | 9,134 | 7,808 | **영업이익** | **6,666** | **10,175** |
| **자산총계** | **82,770** | **127,034** | 영업외수익 | 2 | 48 |
| 기타부채등 | 6,982 | 5,160 | 영업외비용 | 37 | 19 |
| 예수부채 | 4,641 | 49,100 | - | | |
| **부채총계** | **11,623** | **54,260** | **경상이익** | **6,631** | **10,204** |
| 자본금 | 45,000 | 45,000 | 특별이익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4 | 219 | 특별손실 | - | - |
| 이익잉여금 | 25,963 | 27,555 | 법인세 | 1,174 | 2,457 |
| **자본총계** | **71,147** | **72,774** | **당기순이익** | **5,457** | **7,747** |

라. 운용자산규모(2024년 03월 26일 기준 / 단위 : 억원)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재간접 | MMF | 파생형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총 계 |
|---|---|---|---|---|---|---|---|---|---|
| 17,832 | 6,623 | 54,749 | 21,422 | 207,720 | 1,568 | 884 | 3,720 | 1,508 | 316,026 |

※ 위 수치는 일임계약 금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2.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3.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주식회사 신한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 길 20(태평로 2 가) ( Tel : 1599-8000) |
| **홈페이지** | https://www.shinhan.com/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8.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하나펀드서비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br>(Tel : 6714-4600) |
| **홈페이지** | http://www.hanais.co.kr |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
| 한국자산평가 | (110-7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br>(02)2251 -1300<br>-http://www.koreaap.com<br>-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br>-자본금: 50억원 |
| NICE 피앤아이 |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여의도동)<br>(02)398-3900<br>-http://www.nicepni.com/<br>-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br>-자본금: 55.5억원 |
| KIS 자산평가 | (150-8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br>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br>(02)3215-1400<br>-http://www.bond.co.kr<br>-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br>-자본금: 30억원 |
| 에프앤자산평가 | (07805)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br>(02) 721-5300<br>- http://www.fnpricing.com/<br>-설립일: 2011.06.09 / 등록일: 2011.9.23<br>-자본금: 50억원 |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3)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anaam.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설정이후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설정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선정기준 |
|---|---|
| **<투자증권거래>** |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br>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br>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br>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br><br>② 선정절차<br>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br>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br>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br>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br>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br>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 |

| | |
|---|---|
| | 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 (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br><br>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br>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br>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br>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장내파생상품거래>** |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5.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6.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 |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br>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